

붙임 4 도급조사원 최종합격자 공고

동남지방통계청공고 제2023 -378호

2023년 농작물(논벼 등) 생산조사 통계조사요원(도급) 최종합격자 발표

통계청 울산사무소에서는 「2023년 농작물(논벼 등) 생산조사」 도급조사원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9. 22.

통계청 울산사무소장

1 합격자 명단

| 접수번호 | 성명 | 접수번호 | 성명 | 접수번호 | 성명 |
|------|-----|------|----|------|----|
| 2 | 박○영 | | | | |

2 담당업무

| 담당업무 | 주요 담당업무 |
|-----------------|--|
| 도급조사원 (도급계약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지도공무원의 현장조사 준비 지원○ 표본 농가를 통한 수확 예정일 확인 및 연락 체계 유지○ 현장조사 농작물 수확 후 운반 및 탈곡·계수·조제 보조○ 표본시료 건조 및 정선 보조○ 기타(농작물생산조사 관련사항) |

3 계약기간

| 지역 | 모집구분 | 모집인원 | 계약방법 | 계약기간 | | 수당 |
|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울산 | 도급조사원 | 1명 | 도급계약 | 교육(1일) | 2023.10. 5. | 1일 76,960원 |
| | | | | 본조사 | 2023.10. 6.~10.31. | 기간중 15일 |

4 제출서류

- 본인 통장사본 1부
-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
- 증명사진 3.5*4.5 1매(조사원증 부착용, 해당자 및 미제출자에 한함)
- ※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통계청 울산사무소 농어업통계팀 김 형 석 (☎ 052-279-4071)

[붙임 5] 계약서

2023년 농작물(논벼 등) 생산조사 도급조사원 계약서(예시)

「2023년 농작물(논벼 등) 생산조사」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인 동남지방통계청 울산사무소장을 “도급인”이라 칭하고, 계약 상대자를 “수급인”이라 칭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 적)

이 계약은「2023년 농작물(논벼 등) 생산조사」를 위해 “도급인”과 “수급인”이 서로 협력하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도록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
제2조 (도급업무내용 및 업무량)

- ① “수급인”은 “도급인”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「2023년 농작물(논벼 등) 생산조사」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계약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.
 - 근무장소(부서) : 통계청 울산사무소
 - 업무 내용
 - 지도공무원의 현장조사 준비 지원
 - 표본 농가를 통한 수확 예정일 확인 및 연락 체계 유지
 - 현장조사 농작물 수확 후 운반 및 탈곡·계수·조제 보조
 - 표본시료 건조 및 정선 보조
 - 기타(농작물생산조사 관련사항)
- ② 수급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인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“도급인”은 조사기간 중에 중간점검 등 현장을 관찰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3조 (계약기간)

- ① “수급인”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.
 - 교 육 : 2023.10. 5. (1일)
 - 운용기간 : 2023.10. 6. ~ 10.31. (기간 중 15일)
- ② “도급인”은 조사지침서 교육, 현장조사 준비 지원, 조사표 확인 등을 위해 특정 날짜를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소집할 수 있으며, “수급인”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 - ※ 전시 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

제4조 (도급금액 지급)

- ① “도급인”과 “수급인”은 계약 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료하고, 그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급·유급휴가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.
- ② “수급인”은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표 및 각종 관련서류를 “도급인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“도급인”은 그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“양호하다”고 판단된 조사표 작성 실적에 따라 해당 분의 도급금액*을 “수급인”에게 지급한다.
 - ※ 도급금액 지급기준

| 구 분 | 도급금액 | 지 급 기 준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|
| 1. 교육수당 | 76,960원/1일 | - 교육이수 시 지급 |
| 2. 본조사 수당 | 76,960원/1일 | - 조사완료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* 양호로 판단된 경우만 지급 |

* 소득세법 제127조(원천징수의무)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소득총액의 3.3%를 공제한 금액

- ③ 지급은 "수급인"의 조사 완료 후 "도급인"이 조사서류 내용을 확인하고,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내용 확인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한다.
(은행명: _____ 예금계좌번호: _____)

제5조(보험 가입)

"도급인"은 "수급인"과 계약함에 있어 "수급인"에게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"수급인"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게하며, 보험료는 "수급인"이 부담한다. 만일 상해보험에 미가입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"수급인"이 부담한다.

제6조 (중도포기자 등의 도급금액 감액)

"수급인"이 운용기간 중 조사업무의 중도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도급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.

- ① 교육이수 후 포기 : 교육수당의 40% 지급
- ② 일부조사 후 포기 : 본 조사 기간에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교육 및 준비조사 도급금액의 70%와 조사 완료된 조사표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의 80% 지급
- ③ 중도 포기자의 잔여업무 수행(대체자) : 총 도급금액 중 중도포기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도급금액
- ④ 겸업 및 이중취업 : 총 지급할 도급금액 중 20%내에서 감액 지급

제7조(부실,허위조사 등의 보수 감액)

"수급인"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실 또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도급금액의 50%까지 감액지급 할 수 있다.

제8조(의무 및 변상책임)

- ① "수급인"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(벌칙)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.
- ② "수급인"은 조사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"도급인"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"도급인"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.
-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는 향후 2년간 우리 청 모집을 제한한다.
- ④ 수령한 조사용품(줄자, 저울 등)을 분실 및 훼손 시 변상하여야 한다.

제9조(계약해지)

"수급인"이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, 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"도급인"은 "수급인"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0조(용어해석)

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"도급인"과 "수급인"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"도급인"의 해석에 따른다.

제11조(계약 내용의 확인)

"수급인"은 본 계약서의 "제4조"와 "제6조"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전반에 대해 "도급인"으로부터 설명 듣고 "수급인"이 확인 후 아래와 같이 서명한다.

2023년 9월 일

(도급인) 계약권자
통계청 울산사무소장 (서명 또는 인)

(수급인) 계약 상대자
주 소: (전화: _____)
생년월일: _____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[붙임 6] 도급조사원 서약서

서 약 서

본인()은 통계청 울산사무소 도급조사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은 물론,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.
2. 통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도급인의 정당한 요청에 따른다.
3.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 업무를 완수한다.
4. 출·퇴근시간 및 통계청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.
5. 우리청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6.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도급인에게 통지하고 안내를 받는다.
7. 감염병(코로나19 등)등으로 확진 또는 단순·밀접접촉자가 될 경우 즉시 도급인에게 통지하고 도급인의 안내에 따른다.

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3. 9. .

서약자 : (인)

통계청 울산사무소장 귀하

